

2021년 단체협약 합의서

교섭대표노동조합 서울의료원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 '노')과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이하 '의료원', '사')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2021년도 단체협약 합의서를 작성한다.

제1장 임금

1. 3교대 근무 간호사의 처우개선비를 30만원으로 인상한다.
2. 의료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COVID-19')에 대응하는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의 진작을 위하여 격려금을 2021년 연내 지급하며 향후 6개월간 추가지급을 위해 노력한다.
3.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근거하여 급식보조비를 14만원으로 인상한다. 단, 인상 시기(始期)에 관해서는 노사가 별도로 합의한다.
4. 서울의료원 인사제도 개편 노사합의서 제1호 시행의 대상(代償)조치로써, 부장·실장·위원장·팀장직위 수행자(의료직군 제외)의 직책급업무수행비를 조정한다.

5. 안전관리업무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외)에 따른 보조선임자에게 월 6만원의 안전관리수당을 지급한다.
6.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에게 동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에 준하여 안전관리수당을 지급한다.
7. 「2012년 임금협약 부속합의서」 제3호에 따른 고정시간외수당 기본급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제반환경(예산·제도)을 검토한다.

제2장 인 사 제 도

8. 「서울의료원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합의서」 제5호에 근거하여 서울의료원 임금피크제를 재검토하고 필요시 부속합의를 체결한다.
9. 2024년까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의 대상일수를 연간 15일로 확대한다.
10. 기능직군의 직급 명칭을 변경하며, 직원의 처우개선 및 전 직종을 대상으로 승진 및 직급체계 개선을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한다.
11. 초급관리자 보직신설 T/F team 운영을 지속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제도를 운영한다.

12. 감시·단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휴가, 휴일 및 휴게시간을 보장한다.
13. 임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 급여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 의료원 내부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3장 복 리 후 생

14. 임직원 교육시설을 2채 확충하고 하계휴양소 운영을 확대하며 향후 교육시설의 점진적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
15. 「복리후생규정」 제17조에 따라 직원에게 재해부조를 시행하는 데에 있어, 지급액의 기준을 ‘전직원 직전년도 보수월액 평균액’으로 변경한다.
16. 임직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중 1인이 의료원에서 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을 받는 경우에는 추가검사항목(1개)을 지원하며 추가검사항목의 점진적 확대를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한다.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7. 30년 장기근속자에 대한 건강검진 패키지를 5080(남, 여)으로 변경한다.
18. 임신 중인 여성 임직원에게 근무복을 추가로 지급한다.

19. 퇴직연금도입을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한다.
20. 「서울특별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등에 따라 전환된 임직원 중, 이전 용역업체 소속으로 covid-19에 대응한 인력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른 지급대상, 시기, 금액은 별도 정한다.

제4장 기 타

21. COVID-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의 근무조건 및 환경을 개선하여 의료공공성 강화에 노사 공동으로 노력한다.
22. 환자로부터의 폭언·폭행, 성희롱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을 강구한다.
23.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합의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본문에 시기(始期)에 대해 별도로 작성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른다.

제2조(3교대 근무 간호사의 처우개선비 지급) 제1호에 따른 처우개선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기간 만료 시까지 지급한다.

제3조(장기근속자 건강검진 패키지 변경 적용) 제19호에 따른 장기근속자 건강검진 패키지 변경은 2022년 장기근속자 건강검진권 수령자부터 적용한다.

2021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의료원장 송관영



서울의료원 노동조합
위원장 심현정


